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0월 1일

나. 발 의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영등포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기능 구체화 [안 제3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근거 규정이 신설(2021.6.)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시행(2022.12.)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의 위임의 근거 법령에 「지방공무원법」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 법령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변경함.
- 안 제3조는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4조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검토 결과

-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근거가 법률에 신설되어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었음.
- 이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 민사소송, 형사 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재직 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 법령 및 대통령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의 근거 법령 추가,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하는 것으로써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칙 제정 시 구체적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4.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616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25. 10. 20.

제안자: 박현우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부칙도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분하고 조에 제목을 붙이되, 조 번호는 제1조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한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의 번호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조의 번호와 조의 제목을 삭제하여 시행일만 표기되도록 수정함.

2. 수정내용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조의 번호와 조의 제목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조의 번호와 조의 제목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함.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616호
----------	-------

제출연월일: 2025.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영등포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기능 구체화 [안 제3조]
-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 가능성 없음
 - 3)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법령
- 라. 입법예고(2025. 8. 28.~ 9. 1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의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